#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<br>번 호 | |
|---|---|

제출일자 : 2019년 9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, 정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 (안 제5조)

- 지원 대상 사업범위에 공동주택 외벽도색, 옥상방수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 : 2019.8.8.~2019.8.28.)

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지원과-30515(2019.7.30.)]

마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[기획감사실-7558(2019.7.29.)]

성주군 조례 제 호

#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5년 이내에”를 “5년(단, 제7호와 제8호는 10년) 이내에”로 하고, “제7호”를 “제9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외벽도색

8. 옥상방수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5조(지원범위 및 대상)<br><br>① (생략)<br><br>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동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.<br>1.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<br>2.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(보안등 포함)의 유지보수<br>3. 상·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<br>4. 담장의 유지보수(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조경사업 포함)<br>5. 자전거 보관대, 쓰레기 수집 및 처리시설의 개량 및 보수<br>6. 재해위험이 있는 옹벽, 절개지 등의 보수<br>7.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및 공동시설 | 제5조(지원범위 및 대상)<br><br>① (현행과 같음)<br><br>② ----------5년(단, 제7호와 제8호는 10년) 이내에 ----------.<br>1 .----------<br>2 .----------<br>3. ----------<br>4 .----------5.----------<br>7. 외벽도색<br>8. 옥상방수<br>9.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및 공동시설 |